제 415 호

1973.11.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 식
편 집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02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 3

제 803 호 :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폐지조례 4

◎ 규 칙

제 1328호 :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개정규칙 4

◎ 공 고

제 212 호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6

◎ 사 령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135

8-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 802 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는 재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 29 조 제 3 항제 1 호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 이상의 재개발지구에 하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재개발 사업지구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평가액의 결정에 관한사항
2. 시장이 부의하는 가격평가와 관련되는 사항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15 인이상 19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9 조 제 3 항 각호에정한 비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위원장등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

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등의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얻은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조례제803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제316호(1963.12 24)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동장 인사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1. 17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규칙제1328호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장 인사규칙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조(적용) 서울특별시 동에두는 별정직동장(이하"동장"이라한다)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동장의임용및보고) ①동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임용일 현재 30세이상 45세 미만인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다른 동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을 임명하거나 전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 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동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

제 4조 (신원보증) 구청장은 동장을 임명하고자 할때에는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

제 5조 (당연퇴직) 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1 . 55세에 달하였을 때

2 .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 법제 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

제 6조 (직권면직) ①동장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 신체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수 없다고 인정될때

2 . 행정구역의 폐지 , 분합또는 정원의 개폐로인하여 정원이 초과되었을때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때

4 . 주민의신망을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때

5 . 동행정실적심사 결과 그성적이 극히 불량한때

6 . 동행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②전항 제 4호내지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 8조의 규정에의한 동장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7조 (동장의징계사유 및 징계의종류) ①동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이에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1 . 이규칙 또는 이에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때

2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때

3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동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4 .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때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과 견책으로 한다 .

제 8조 (동장징계위원회) ①구에 동장의 징계를위하여 동장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각각 되며 위원은 각실,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출장소 관할 동장에 대한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위원중 1명이상을 당해 출장소 과장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인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징계절차) ①동장의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위임) 이 규칙중 출장소 관할등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당해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212 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완 료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64호(71.10.12)로 실시 계획 인가된 바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85조 제1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 11.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집행지 : 시내관악구신림동산151
2. 사 업 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3. 준 공 면 적 : 7,800평
4. 사업시행자 : 시내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번지 이재화
5. 사 업 기 간 : 착공 : 71.10.27.
   준공예정일 : 73.9.30.
6. 준공년월일 : 1973.11.17
7. 준공도면 : 별첨인증도면(생략)

사　　령

◎ 1973.11.15.

성북지방행정수도사업소 서기　박석웅

동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지방행정수도사업소 서기　김영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지방행정서기　조성환

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지방행정서기　배승균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지방행정수도사업소 서기　김현국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성동구지방행정서기　구본길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지방행정서기보　이현일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지방행정서기보　송명규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지방행정서기보　임충재

운동장 근무를 명함.

운동장지방행정서기보　설영숙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지방행정서기보　심영철

중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지방행정서기보　송무웅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지방행정서기보　이원

갱생원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지방행정서기보　김석태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3.11.16.

이영미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부녀과 근무를 명함.

박용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신연희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188

2138

8-6

오 세 정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 경 숙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이 봉 화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 조 기 복

제주도 전출을 명함.

성동구산업과 행성주사보 김 동 영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산업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태 수

성북구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 손 동 수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주사 박 종 주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주사 윤 영 숙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남 제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자동차정비창 지방행정주사보 고 진 규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철 삼

양노원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주사 양 홍 석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행정주사 이 영 준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 1973.11.20.

양 주 군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조 성 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농촌지도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유 효 호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B-7

여 은 희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보건소(방역과장직무대리) 지방보건연구관 김 학 영

마포구보건소 방역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마포구보건소(방역과장) 지방보건기좌 양 창 모

동대문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동대문구보건소(방역과장) 지방보건기좌 이 종 화

영등포구보건소 방역과장에 보함.

서 울 특 별 시 장